

기술발전과 사회정책의 과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기술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킨다. 기술발전이 산업과 생산양식에 돌이키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 이는 산업혁명이라 불린다. 증기기관이 인간과 동물의 노고를 대신하는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수공업에서 대량생산 양식으로의 전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에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과 정보가 결합하는 초지능, 초연결 사회라는 새로운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혁명’이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가 단번에 깨지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급격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몇 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전의 생산방식은 변화하고 그 속에서 생산인구의 지위도 달라졌으며,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제도도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 노동자들은 영주나 마을의 보호에서 벗어나, 도시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산업재해, 질병, 노년의 은퇴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혁명,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이제 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동노동이 금지되고,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력에 맞설 수 있도록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산재, 질병, 노령은퇴,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사회보험제도를 제정하게 되

었다. 이는 공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이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정보가 결합하면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한 장소에 모여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업주-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노동자의 관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는 일해서 먹고산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지만, 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등을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종사상 지위 또한 기존의 임금노동자에서 프리랜서, 클라우드 소싱 취업자, 온라인 상점 취업자, 창업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종사상 지위를 갖거나, 둘 이상의 네트워크와 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그간의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 나타나는 일자리와 종사자들은 기존에 사업주-노동자의 틀 속에서 확립된 사회적 보호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일하는 방식에 자율성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한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의 양이 감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한 소수를 제외하면 사회적 보호 없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제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이 발전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회정책적 고민이기는 하지만, 특히 동북아에서 이러한 고민의 깊이가 더 깊다. 시민권에 기반을 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마련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업복지의 역할이 상당하고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통하여 사회보험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동북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과 노동법적 보호 둘 다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서 일하는 클라우드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적 표준의 확립 또한 절실하다.

이번 호에 제시된 중국과 일본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글은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의 상태와 사회정책적 고민을 담은 것이다.¹⁾ 각 글에서는 플랫폼 및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성장의 원동

1) 이번 호 기획특집 원고 ①, ②, ③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플랫폼 노동에 대하여 논의한 제16차 동

력이 되고 있고,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들이 사업주에게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우는 기존 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네트워크(플랫폼)를 사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파견 사업주나 도급 사업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직업소개소로 보고 사회보험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등의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임금근로자에서 취업자로 확대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이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기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규율을 강화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플랫폼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모든 방법은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이 틀에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잘 넣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만일 플랫폼 경제의 발달이 소위 ‘혁명’에 해당한다면 우리의 논의는 조금 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나 국제기구가 최상위 개념 설계자의 역할을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하여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새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소득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념의 사회보장세 및 기본소득 도입, 노동헌법 제정 등 최근 나타나는 일련의 논의 들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KL**

북아노동포럼(2018년 11월 2일, 중국 청도)에서 발표된 글이다.